

**STANDARD TERMS & CONDITIONS**  
**표준 계약 조건**

<p>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will govern all transactions with Goulds Pumps Co., Ltd and/or any of its affiliates or subsidiaries (collectively “Purchaser”) unless expressly agreed by the parties in writing. These Terms and Conditions are incorporated by reference into all written Purchase Orders and electronic Purchase Orders as if expressly set forth therein, and, unless otherwise provided herein, any written acknowledgement of a Purchase Order, or any other commencement of performance constitutes acceptance thereof by the Seller. Acceptance is limited to these Terms and Conditions and Purchaser hereby objects to any terms or conditions varying the terms hereof in any written acknowledgement or form provided by Seller; such terms shall be of no force and effect.</p>	<p>계약 당사자들이 별도로 명시적인 서면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다음 계약은 Goulds Pumps Co., Ltd 및/또는 그 계열사 내지 자회사(이하 “구매자”)와의 모든 거래를 규율한다. 본 계약 조건은 모든 주문계약서 및 전자 주문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참고상 수록되며 본 계약에 별도의 요건을 명시하지 않는 한, 주문계약서의 서면 확인 또는 그 외 계약 이행의 개시는 판매자가 주문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판매자의 주문 수락은 본 계약 조건에만 국한되며 구매자는 판매자가 전달한 모든 확인서 또는 그 양식에서 본 계약의 제반 조항을 변경하는 어떠한 조건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또한 그러한 조건들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p>
<p><b><u>1. DELIVERY OF PRODUCTS/SERVICES-</u></b> Purchaser’s production schedules and warranties to its customers are dependent upon the agreement that deliveries of the goods and services covered by this Purchase Order will occur on the required delivery. Therefore, time is of the essence. The date specified for delivery is the required date at Purchaser’s plant, unless otherwise noted. Purchaser reserves the right to refuse any goods or services and to cancel all or any part thereof if Seller fails to deliver all or any part of any goods or perform all or any part of any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specified herein. If Seller’s deliveries will not meet agreed schedules, Seller must inform Purchaser immediately. Purchaser may, at its option, require Seller to ship via a more rapid route or carrier, at Seller’s expense and/or require that Seller pay liquidated damages of five hundred dollars (\$500.00) per day for every day that the shipment or shipments are delayed.</p>	<p><b><u>1. 제품/서비스의 인도</u></b> - 고객에 대한 구매자의 생산 일정 및 보증 사항들은 주문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발주 요청에 따라 인도 한다는 계약에 의거해 결정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은 시간이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약정된 인도일은 구매자의 공장에서 발주 요청을 받은 날짜를 가리킨다. 본 계약에 명시된 제반 조건에 따라 판매자가 어떤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도하지 못하거나 어떤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구매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를 거부하고 그러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내지 일부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 약정된 일정 안에 제품 인도 또는 서비스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판매자는 즉시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비용 부담으로 보다 빠른 배송 경로나 운송업체를 통해</p>

<p>Seller agrees that this is a true estimate of the damages Purchaser will suffer as a result of any delay and said sums shall not be construed as a penalty.</p>	<p>제품을 발송할 것을 본인의 선택에 따라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혹은 배송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 1 일당 5 백 달러(\$500.00)의 손해배상예정금을 납부할 것을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는 이 예정금이 배송 지연으로 인해 구매자가 입는 피해의 실제 추정액에 해당되며 앞서 언급한 금액은 위약금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에 동의한다.</p>
<p><b>2. ACCEPTANCE</b> - Acceptance of any part of an order shall not bind Purchaser to accept future shipments or performance of services nor deprive it of the right to return goods already accepted and shall not be deemed to be a waiver of Purchaser's right to cancel or return all or any part of the goods because of failure to conform to order or by reason of defects, latent or patent, or of other breach of warranty, or to make any claim for damages, including manufacturing cost or loss of profits, injury to reputation or other special, consequential and incidental damages occasioned by Purchaser. Such rights shall be in addition to any other remedies provided hereunder or provided by law. Delivery shall not be deemed complete until goods have been actually received and accepted by Purchaser, notwithstanding delivery to any carrier or until any services have been performed, received and accepted. If the goods do not in every respect correspond with the description set forth on the Purchase Order or in the specifications or drawings, Purchaser may at any time return all or part of such goods at the Seller's expense. Goods and/or services received as over shipment, not ordered, and/or substitution will be subject to a handling charge, and is subject to all other rights and remedies available to the Purchaser. Purchaser shall not be required to pay, return or care for any goods and/or services that exceed the order. If Purchaser decides to return any excess to Seller, all costs and risk of loss associated with the</p>	<p><b>2. 수락</b> - 판매자가 어떤 주문의 일부분을 수락할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의 차후 제품 발송 또는 서비스 이행을 반드시 수락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미 인수한 제품을 반품할 수 있는 구매자의 권리는 박탈되지 않는다. 또한 판매자의 그러한 주문 수락은 주문 불이행 또는 잠재적 결함 내지 명백한 결함 또는 그 외 보증 위반을 이유로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품할 수 있는 구매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혹은 제조 비용 내지 손실, 명예훼손 또는 그 외에도 구매자가 야기한 특수적, 필연적, 부수적 피해를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매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도 안 된다. 그러한 권리는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법률상 규정된 그 밖의 모든 구제수단과 함께 부가적으로 부여한다. 인도는 판매자가 운송업체에 제품을 인도하더라도 구매자가 주문한 제품을 실제로 수령 및 인수하기 전까지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혹은 판매자가 어떤 서비스를 이행하거나 구매자가 어떤 서비스를 획득 및 인수하기 전까지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해당 제품이 모든 점에서 주문계약서 또는 시방서나 도면에 명시된 설명과 내용상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의 비용 부담으로 그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든지 반품할 수 있다. 주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p>

<p>return shall be Seller's. Payment for any goods or services shall not be deemed acceptance and in no event shall Purchaser incur any liability for payment for rejected goods or services.</p>	<p>배송을 통해 수령한 제품 및/또는 서비스 및/또는 그 대체물에 대해서는 취급 수수료가 청구되며 구매자는 이에 대해 다른 모든 권리를 행사하거나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구매자는 주문 액수를 초과하는 모든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대금을 결제하거나 이를 반품 또는 조심해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없다. 구매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잉여분을 판매자에게 반환하기로 결정할 경우, 반환과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손실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모든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 결제는 구매자의 주문 수락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구매자는 어떤 경우에도 구매를 거부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대금을 결제해야 할 책임이 없다.</p>
<p><b>3. INVOICES AND PACKAGING</b> - The goods purchased hereunder must be suitably packed and prepared for shipment to secure the lowest transportation rates or appropriately packed to comply with any specific transportation specifications of Purchaser, and in all cases, to comply with carriers' regulations. All charges for packing, crating, drayage, transportation and storage are included in the price for the goods set forth herein and will be paid by Seller except as otherwise written in the Purchase Order. For domestic shipments within the USA, when packaged item(s) leave the Seller's premises, title, and risk of loss and damage shall remain with Seller until delivery to Purchaser's place of business and inspection of product is satisfied. For shipping point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title and risk of loss and damage shall remain with Seller until day of import into the United States where title will pass to the Purchaser. Purchaser may charge Seller for damage to or deterioration of any Goods resulting from Seller's failure to package Goods in compliance with general industry practices. Seller must include on each invoice and carton: Purchaser's Order Number; Carton and Number of Cartons in the Shipment; Seller's Invoice Number; a</p>	<p><b>3. 송장 및 포장</b> - 본 계약에 의거해 구입한 제품은 최저 수준의 운송 요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포장한 후 발송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혹은 구매자의 특정 운송 사양을 준수하고 운송업체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하게 포장해야 한다. 일반 제품 포장, 나무 상자 포장, 화물 운반(drayage), 운송 및 보관 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는 본 계약에 명시된 해당 제품의 가격에 포함되며, 주문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이 수수료는 판매자가 부담한다. 미국 내에서 제품을 발송할 경우, 포장이 완료된 해당 품목이 판매자의 사업장에서 발송되어 구매자의 사업장에 인도된 후 제품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소유권, 손실 위험 및 피해는 판매자가 계속 보유하거나 부담한다. 해외 판매자가 미국의 구매자에게 제품을 발송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소유권, 손실 위험 및 피해는 제품이 미국에 도착하는 날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판매자가 계속 보유한다. 판매자가 업계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제품을 포장하지 않은 이유로 제품이 파손되거나 품질이 저하될 경우,</p>

<p>separate packing list for each order clearly marked which details the product's model number, make, type and serial number, and quantity. In the event that no such packing list accompanies any shipment, the count or weight or other measure of Purchaser shall be final and conclusive. Any increased charges due to Seller's failure to comply with this section shall be payable by Seller.</p>	<p>구매자는 그에 따른 비용을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판매자가 각 송장 및 제품 포장용 상자에 반드시 수록해야 할 사항은 구매자의 주문 번호, 포장용 상자 및 배송 시 포장용 상자의 수, 판매자의 송장 번호, 해당 제품의 모델 번호, 제작법, 종류 및 일련번호, 수량 등 세부 정보를 주문별로 명시한 별도의 포장명세서이다. 그러한 포장명세서가 배송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구매자가 주문한 제품의 수량, 중량 또는 여타 도량 단위가 최종적이며 확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판매자가 이 조항의 제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로 늘어난 액수의 수수료는 판매자가 부담한다.</p>
<p><b>4. SHIPPING AND ROUTING</b> –Seller shall follow shipping instructions shown on this Purchase Order or previous routing letter or Purchaser's Inbound Routing Guide. Unless otherwise stated in writing, transportation from all domestic (U.S.) shipping points is F.C.A. Seller's Place, freight collect via Purchaser's preferred carrier to the Purchaser's facility at the address shown on the Purchase Order. The term "F.C.A. Seller's Place" as used in this section, means free of expense to the Purchaser, on board the carrier's conveyance, at a specified Seller's shipping point.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Purchase Order, transportation from all shipping points outside the United States is Ex-Works (EXW). Seller shall bear the risk of loss and damage to the goods until Purchaser provides final acceptance or delivery at the destination, whichever occurs later.</p>	<p><b>4. 제품 발송 및 배송 절차</b> – 판매자는 본 주문계약서 또는 기존 배송절차서 또는 구매자의 국내배송절차안내서에 명시된 제반 배송 지침을 준수한다. 별도의 요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국내(미국) 지점에서 발송된 제품은 판매자의 사업장에서 운송인 인도 조건(F.C.A. Seller's Place) 및 도착지 운임 후불 조건으로 구매자가 선호하는 운송업체를 통해 주문계약서에 명시된 주소에 위치한 구매자의 시설로 배송한다. 본 항에 인용된 "판매자의 사업장에서 운송인 인도 조건(F.C.A. Seller's Place)"이란 지정된 판매자 측 발송 지점에서 발송한 제품을 구매자의 비용 부담 없이 운송업체가 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주문계약서에 별도의 요건을 명시하지 않는 한, 미국을 제외한 해외의 모든 지점에서 발송한 제품은 출국항판매자 공장인도(Ex-Works (EXW))조건으로 배송되는데, 이는 구매자가 주문한 제품을 판매자의 배송지에서 인도하거나 구매자가 최종적으로 인수할 때까지( 두 가지 경우 중 나중에 이루어지는 절차를 기준으로 함) 판매자는 제품의 손실 위험 및 피해를 부담한다.</p>

	<p>도착지에 배송된 제품을 구매자가 최종적으로 인수 또는 인도할 때까지(두 가지 경우 중 나중에 이루어지는 절차를 기준으로 함) 판매자는 제품의 손실 위험 및 피해를 부담한다.</p>
<p><b><u>5. PRICE AND TERMS OF PAYMENT-</u></b> This is a firm price order that includes all taxes, charges, fees, levies or other assessments now in effect or hereafter enacted. Seller will be responsible for the remittance of taxes to the appropriate taxing authorities. Unless otherwise stated, all prices are in United States Dollars (USD). The original and one copy of a bill of lading or comparable shipping document must accompany Seller's invoices. Payment of such invoices shall be subject to a pro rata adjustment by Purchaser for any shortage in the goods shipped or defective goods rejected by Purchaser or for any failure to perform services or defective performance thereof. Invoices shall be dated no earlier than date of shipment or delivery of service. Any discount period shall be calculated from either: a) receipt of an appropriate invoice; b) required delivery date; or c) date any dispute is resolved, whichever date is later. Purchaser will pay non-discountable invoices on End of Month 65 (EOM 65) terms of payment after receipt of invoice, required delivery date, acceptance, or the date any applicable dispute is resolved, whichever date is later unless specific agreement on alternate terms is reached between Seller and Purchaser. At Purchaser's option, all invoiced amounts shall be subject to a two (2) % early payment discount for all payments remitted by Purchaser within 10 days of Purchaser's receipt of an invoice. Once payment for the goods and services has been made to Seller, title shall pass directly to Purchaser.</p>	<p><b><u>5. 가격 및 지불 조건-</u></b> 본 거래는 현재 발효 중이거나 향후 제정되는 모든 세금, 수수료, 요금, 부과금 또는 기타 추징금을 포함하는 확정가격 주문에 속한다. 판매자는 해당 세무당국에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본 계약에서 별도의 요건을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가격은 미국 달러(USD)를 단위로 한다. 판매자측 송장은 선하증권(B/L) 또는 그와 유사한 선적 서류의 원본 및 사본 1 부를 반드시 동봉해야 한다. 이미 배송된 제품 또는 구매자가 거부한 불량품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구매자가 주문한 서비스를 판매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혹은 등 서비스의 이행 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러한 송장의 대금은 구매자가 일정한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송장의 날짜는 이르면 제품 발송일 또는 서비스 제공일 이후의 기일이어야 한다. 모든 할인 기간은 a) 해당 송장의 영수일, b) 주문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제품 인도일 또는 c) 주문 거래상의 어떤 분쟁이 해결된 날 중 상대적으로 늦게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구매자는 송장 영수일, 주문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인도일, 인수일 또는 어떤 분쟁이 해결된 날 중 상대적으로 늦게 도래하는 기일 이후에 EOM 65(End of Month 65) 대금 지급 조건에 따라 비할인 송장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판매자와 구매자가 별도의 대체 약정에 합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모든 송장 금액은 구매자가 송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10 일</p>

	<p>이내에 구매자가 송금한 모든 대금에 대하여 2 퍼센트(2%)의 선불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었다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직접 이전된다.</p>
<p><b>6. WARRANTIES</b> - Seller represents and warrants (a) that the price charged for the goods and/or services purchased hereunder shall be no higher than Seller's current price to any other customer for the same quality and quantity of such goods or services; (b) that all goods delivered hereunder will be new, unless otherwise specified and free from defects in material and workmanship, that all goods will conform to applicable specifications, drawings, and standards of quality and performance, and that all items will be free from defects in design and suitable for their intended purpose; (c) that the goods covered by this order are fit and safe for consumer use, if so intended; (d) that it owns all rights, title and interest in the goods and services and has the legal authority to sell, license or otherwise transfer the right to use or sell to Purchaser; (e) that all services performed pursuant hereto will be free from defects in material and workmanship and will be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ations and instructions of Purchaser provided nevertheless that Seller shall retain discretion and control with respect to the manner and means of performing such services and shall at all times remain an independent contractor; (f) that the goods covered by this Purchase Order are in compliance with all laws, regulations, rules, and orders relating to the importation of goods into the United States, the exportation of goods out of the country of origin, the transit of goods through intermediate countries and the</p>	<p><b>6. 보증 사항</b> - 판매자는 (a) 본 계약에 따라 구매한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청구된 가격이 동일한 품질 및 수량의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판매자가 여타 고객에게 청구하는 시가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점, (b) 본 계약에서 별도의 요건을 명시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따라 인도된 모든 제품은 신제품으로서 재료 및 제작 기술 면에서 일체의 하자가 없고 모든 제품은 해당 시방서, 도면 및 품질/성능 표준의 제반 규격 요건을 준수하며 모든 품목은 설계상의 결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의도한 사용 목적에 적합할 것이라는 점, (c) 본 주문 거래의 대상이 되는 해당 제품은 애초에 설계된 대로 소비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안전하다는 점, (d) 판매자는 해당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보유하며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권 내지 판매권을 구매자에게 매도, 허여 또는 양도할 법적 권한이 있다는 점, (e) 본 계약에 준거하여 이행한 모든 서비스는 내용 및 기술 면에서 하자가 없고 구매자의 제반 규격 및 지침에 따라 이행될 것이며, 다만 판매자는 그러한 서비스를 이행하는 방법 및 수단과 관련해 재량권과 통제권을 보유하고 항상 독립적인 계약자의 자격을 유지한다는 점, (f) 본 주문계약서의 거래 대상에 해당되는 제품은 미국의 외국산 제품의 수입, 원산지 이외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제품 수출, 중개국을 통한 제품의 수송 및 미국 내에서 외국산 제품의 판매 및</p>

<p>sale and use or foreign made goods in the United States; and (g) that the goods provided pursuant to this Purchase Order do not contain asbestos, lead or mercury which are banned from all products utilized in the manufacturing and assembly of Purchaser's products. All th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Seller, together with any additional service warranties and guarantees of Seller, if any, shall run to Purchaser and Purchaser's customers. Seller agrees to indemnify and hold Purchaser harmless from all claims, liability, loss, damage and expense including special, consequential and incidental damages incurred or sustained by Purchaser by reason of any breach of any of the above warranties with respect to the goods or services which are purchased hereunder.</p>	<p>사용 등과 관련된 모든 법률, 규정, 규칙 및 명령을 준수한다는 점, (g) 본 주문계약서에 준거하여 제공된 제품들은 구매자가 소유한 제품의 제조 및 조립 시 활용된 모든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 석면, 납 또는 수은을 전혀 함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각각 진술 및 보증한다. 판매자의 모든 진술과 보증은 판매자의 추가적인 서비스 보증 및 보장과 함께 구매자 및 구매자 측 고객들에게 계속 적용한다. 판매자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구매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기의 보증 사항들을 위반한 이유로 구매자가 입은 특수적, 필연적, 부수적 피해를 포함해 모든 청구, 채무, 손실, 피해 및 비용을 배상하고 구매자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동의한다.</p>
<p><b>7. INSPECTION</b> - All goods supplied and services performed shall be subject to inspection and test by Purchaser and its agents at all times and places, whether during or after manufacture as to goods, or performance as to services, and notwithstanding the terms of delivery or payment or, as to goods, that title has not yet passed to Purchaser . In the event that goods supplied pursuant hereto or services performed hereunder contain defects in material or workmanship or, as to services, are not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ations and instructions of Purchaser, Purchaser may require prompt correction thereof or, as to services, require that the services be rendered again at Seller's expense or, as to goods, require that the goods be replaced at Seller's expense. If such defects exist or if Seller is unable or refuses to replace the goods or render the service again promptly, Purchaser may replace such goods or obtain such services and charge Seller or deduct from amounts owed by Purchaser to Seller the costs, expenses and losses including incidental and consequential damages incurred thereby which are in excess of Seller's price</p>	<p><b>7. 검사</b> - 구매자에게 제공된 모든 제품 및 서비스는 인도 또는 대금 지급 조건에 관계없이 혹은 제품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아직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품 제조 도중 또는 이후와 서비스 이행 도중 또는 이후에 구매자 및 그 대리인이 항시 어느/모든 장소에서 직접 검사 및 시험한다.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제품 또는 서비스가 재료 또는 기술상 결함을 내재하고 있거나 서비스의 수행이 구매자의 제반 규격 요건 및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그러한 결함 또는 불이행을 조속히 시정할 것을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의 비용 부담으로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거나 제품을 교환할 것을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결함이 존재할 경우 혹은 판매자가 해당 제품의 교환 내지 조속한 서비스 재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구매자는 그러한 제품을 교환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판매자 측 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한</p>

<p>for such goods or services. After notification to Seller that goods are defective, all risk of loss with respect to such goods shall be in Seller and Seller shall pay all packing and shipping charges in connection with defective goods returned by the Purchaser. Purchaser's approval of design furnished by Seller shall not relieve Seller of its obligations herein. All rights and remedies of the Purchaser hereunder shall be in addition to any other remedies provided by law.</p>	<p>제반 비용, 경비 및 손실(부수적, 필연적 피해를 포함)을 판매자에게 청구하거나 혹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품에 결함이 있음을 판매자에게 통보한 후, 그러한 제품에 대한 모든 손실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하며, 구매자가 반품한 불량품의 포장비 및 배송비는 모두 판매자가 부담한다. 판매자가 제공한 의장을 구매자가 승인하더라도 판매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판매자의 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 본 계약에 의거한 구매자의 모든 권리 및 구제수단은 법률상 규정된 그 밖의 모든 구제수단과 함께 부가적으로 부여된다.</p>
<p><b>8. INFRINGEMENT</b> – Purchaser reserves the right at its option to return at Seller's expense any goods and cancel this Purchase Order where a claim is made (whether founded or unfounded) that Purchaser's use of the goods infringes any alleged patent, design, trademark, copyright, right of privacy, or any other tangible or intangible personal or property rights. Seller agrees to indemnify, defend and hold Purchaser harmless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liability, claims, suits, actions, losses, causes of action, judgments, damages, penalties, costs, disbursements, or expenses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s' and experts' fees) which may be asserted, alleged, demanded, claimed, recovered or otherwise incurred or sustained by Purchaser related to any alleged or actual infringement by the goods or services of any third party's patent, copyright, trade secret, trademark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hether or not Purchaser furnishes specifications.</p>	<p><b>8. 침해</b> – 구매자 본인이 구입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사생활 보호권 또는 그 외 유형 내지 무형의 사적 권리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혐의가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기될 경우, 구매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판매자의 비용 부담으로 모든 제품을 반품하고 본 주문계약서의 주문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규격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어떤 제 3 자의 특허권, 저작권, 영업 비밀, 상표권 또는 그 외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 또는 사실과 관련해 구매자가 주장, 제기, 요구, 청구, 회수 또는 부담할 수 있는 모든 책임, 청구, 고소, 소송, 손실, 소송 사유, 판결, 피해, 벌금(위약금), 비용, 배상 또는 제반 경비(적정한 액수의 변호사 비용 및 전문가 의뢰비를 포함)를 구매자에게 배상하고 앞서 언급한 각종 책임으로부터 구매자를 보호 및 면책하기로 동의한다.</p>
<p><b>9. INDEMNIFICATION</b> – Seller shall,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indemnify,</p>	<p><b>9. 배상</b> – 판매자는 (a) 본 주문계약서의 어떤 조건 또는</p>



<p><b>defend and hold</b> Purchaser harmless from and against all potential claims, liabilities, demands, penalties, forfeitures, suits, judgments, and the associated costs and expense (including attorney's fees) which Purchaser may hereafter incur, become responsible for or pay out as a result of death or personal injury (including bodily injury) to any person, destruction or damage to any property, contamination of or adverse effects on the environment and any clean up costs in connection therewith, or any violation of governmental law, regulation, or orders, caused, in whole or in part, by; (a) Seller's breach of any term or provision of this Purchase Order; (b) any negligent or willful acts, errors, or omissions by Seller, its employees, officers, agents, representatives or subcontractors in the performance of this Order; or (c) Seller's goods and/or services. Purchaser shall not, under any circumstances, be liable to Seller, its agents, subcontractors or any third party for any punitive, exemplary or indirect, incidental, consequential or special damages.</p>	<p>조항을 판매자가 위반하는 행위, (b) 본 주문의 이행 과정에서 판매자와 그 임직원, 대리인, 대리점 또는 하청업자들이 범한 과실 내지 고의적 작위, 착오 또는 부작위 또는 (c) 판매자의 제품 및/또는 서비스 등이 전적인/부분적인 원인으로 작용해 개인의 사망 또는 부상(신체적 상해를 포함), 재산의 파괴 또는 파손, 환경 오염 혹은 환경적 악영향 그리고 그와 관련해 발생하는 오염 제거(청소) 비용 또는 정부의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서 구매자가 이후에 직접 부담하거나 책임을 지거나 혹은 지불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청구, 채무, 요구, 벌금(위약금), 몰수, 소송, 판결 및 그와 관련된 제반 비용 및 경비(변호사 비용을 포함)를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매자에게 배상하고 그러한 각종 책임으로부터 구매자를 보호 및 면책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자는 판매자와 그 대리인, 하청업자 또는 제 3 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징계적 내지 간접적 손해배상, 부수적 손해배상, 필연적 손해배상 또는 특별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없다.</p>
<p><b>10. INSURANCE</b> -Seller agrees, if and when requested by Purchaser, to procure a policy or policies of insurance in a form satisfactory to Purchaser including endorsement specifically naming Purchaser as an insured, insuring all property of Purchaser or other party which is connected with this order and of which Seller has care, custody, control or the right of control against loss or damage resulting from fire, including extended coverage, malicious mischief and vandalism. Satisfactory evidence of such insurance shall be submitted to Purchaser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request. Seller shall furnish certificates of insurance prior to start of work on Purchaser's or its customer's</p>	<p><b>10. 보험</b> - 판매자는 구매자를 특별히 피보험자로 지명하는 내용의 배서를 포함해 구매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양식의 보험증서를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전달하기로 동의하며, 본 주문과 관련된 재산으로서 판매자가 관리, 보호 및 감독하거나 화재로 인한 손실 내지 피해(확장 담보, 고의적 기물 파손 및 공공 기물 파손 등을 포함)를 억제할 권리의 대상이 되는 구매자 또는 기타 당사자의 모든 재산을 부보하기로 동의한다. 판매자는 그러한 보험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적정한 시한 내에 구매자에게 제출한다. 판매자는 구매자 또는 그 고객의</p>

<p>premises and indemnify Purchaser against all loss, damage or liability arising from such work.</p>	<p>사업장에서 영업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 증서를 제공하고 그러한 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피해 또는 책임으로부터 구매자를 면책한다.</p>
<p><b><u>11. CHANGES.</u></b> Purchaser may at any time by written or electronic notice make changes within the general scope of this Purchase Order in an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 Drawings, designs, or specifications; (b) method of shipment or packing; (c) quantities; (d) delivery schedules; (e) place of delivery; and (f) instructions with respect to the rendition of services. If any such change increases or decreases the cost of, or the time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 order, an equitable adjustment in the price and/or delivery schedule will be made and set forth in a written modification to this Purchase Order. Any claim for adjustment by Seller under this clause must be made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written notification of change.</p>	<p><b><u>11. 변경</u></b>- 구매자는 본 주문계약서의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 즉, (a) 도면, 의장 또는 시방서, (b) 발송 방법 또는 포장 방법, (c) 수량, (d) 배송 일정, (e) 인도 장소 및 (f)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제반 지침을 서면 또는 전자 통지를 통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주문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시간이 그러한 변경으로 인해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할 경우, 가격 및/또는 배송 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하며, 조정 내용은 본 주문계약서의 수정분에 명시하기로 한다. 본 조항에 의거한 판매자의 조정은 변경 통지서를 수신할 날로부터 늦어도 30 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p>
<p><b><u>12. PROPRIETARY INFORMATION AND WORK FOR HIRE</u></b> - Unless otherwise agreed by Purchaser in writing, Seller shall keep confidential and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any confidential and/or proprietary materials provided by Purchaser to Seller in connection with Seller's performance of this Purchase Order. Such confidential and/or proprietary information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ny drawings, masters, software, specifications, raw materials, parts, components, data, business information or plans provided by Purchaser to Seller. Seller shall not make any additional copies of such proprietary or confidential information except as specifically authorized by Purchaser in writing. At the completion of this Purchase Order, or upon Purchaser's request, Seller shall promptly return to Purchaser all proprietary or confidential information. Seller shall use such information solely for Seller's performance of this Purchase Order for Purchaser, and Seller</p>	<p><b><u>12. 독점 정보 및 직무 저작물</u></b> - 구매자의 별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판매자는 본 주문계약서에 따른 판매자의 주문 이행과 관련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비밀 자료 및/또는 독점 자료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제 3 자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비밀 정보 및/또는 독점 정보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도면, 원판(마스터), 소프트웨어, 시방서, 원재료, 부품, 구성품, 데이터, 영업정보 또는 설계도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구매자가 특별히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판매자는 그러한 독점 정보 또는 비밀 정보의 사본을 추가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본 주문계약서의 주문 완료 시 또는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판매자는 모든 독점 정보 또는 비밀 정보를 구매자에게 즉시 반환한다.</p>

<p>shall not, without Purchaser's written consent, directly or indirectly use any such information derived there from in performing services or providing goods for any other customer of Seller, or any other person or entity. In the event that Purchaser requests that Seller specially manufacture, develop or design goods for Purchaser, Seller agrees that any resulting designs, drawings, blueprints, plans, specifications, data, business information or other materials used to develop and design said goods will be considered as "work for hire" under applicable laws, and will be owned and used exclusively by Purchaser for any purpose whatsoever.</p>	<p>판매자는 구매자를 위하여 오로지 본 주문계약서의 주문을 이행할 목적으로만 그러한 독점 정보 또는 비밀 정보를 활용하며, 판매자는 본인의 여타 고객 또는 그 외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제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주문계약서로부터 파생된 그러한 정보를 구매자의 서면 동의 없이 직간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구매자가 본인을 위한 제품을 특별히 제조, 개발 또는 설계할 것을 판매자에게 요청할 경우, 판매자는 그러한 제품을 개발 및 설계하는 데 사용되는 의장, 도면, 청사진, 설계도, 시방서, 데이터, 영업정보 또는 기타 자료들이 해당 준거법에 의거해 "직무 저작물"로 간주되며 이러한 직무 저작물은 어떤 목적이든 간에 전적으로 구매자가 소유 및 사용하기로 한다는 요건에 동의한다.</p>
<p><b>13. PURCHASER'S PROPERTY</b> - Except as otherwise specified by Purchaser in writing, all tools, dies, gauges, fixtures, or other means required to execute this order shall be supplied by Seller. Any such items paid for by Purchaser or furnished to Seller without cost to Seller shall be the property of Purchaser and shall be used only in filling orders from Purchaser. All work product developed by Seller and provided to Purchaser are and shall remain the personal property of Purchaser. Seller acts as a bailee and Seller shall indemnify and hold harmless Purchaser from any loss or damage to said property which is caused by or as a result of negligence, act or omission on the part of Seller or its agents, employees or others until such time as such property is delivered into the possession of Purchaser. With respect to such property, Seller will: (a) make and affix such markings thereon as Purchaser may direct; (b) make no change, modification or alteration thereto without Purchaser's written consent; (c) make no use thereof, except in</p>	<p><b>13. 구매자의 재산</b> - 구매자가 서면으로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지 않는 한, 본 주문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 다이스, 게이지, 고정구 또는 기타 기구들은 판매자가 제공한다. 구매자가 결재했거나 혹은 판매자의 비용 부담 없이 판매자에게 제공된 그러한 모든 품목들은 구매자의 재산에 속하며 구매자가 발주한 주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만 활용한다. 판매자가 개발했으며 구매자에게 제공된 모든 저작물은 구매자의 개인 재산에 속하며 그러한 개인 재산으로 유지된다. 그러한 재산이 구매자에게 인도되어 구매자의 소유가 될 때까지 판매자는 수탁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판매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 직원 또는 그 밖의 관계자가 범한 과실,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필연적 혹은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재산의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구매자에게 배상하고 그러한 손실 또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p>

<p>the production of material ordered by Purchaser; (d) store the same without charge to Purchaser in separated racks or in sections of Seller's plant, in either case, clearly marked "Property of Goulds" and (e) maintain the same in good condition excepting only ordinary wear and tear. If Seller acquires tools or manufactures them in connection with this order and charges Purchaser for the use thereof or a tool service charge in connection therewith, Purchaser may, at its option, upon completion or termination of this Purchase Order, elect to take title to such tools and upon receiving notice of such election, Seller will deliver such tools to Purchaser upon payment by Purchaser to Seller of that portion of the cost of such tools which was incurred by Seller at its expense.</p>	<p>구매자를 보호한다. 그러한 재산과 관련해 판매자는 (a)구매자가 지시할 수 있는 표지를 그러한 재산에 명시 및 부착하고 (b)구매자의 서면 동의 없이 그러한 재산을 변경, 수정 또는 개조하지 않기로 하며 (c)구매자가 주문한 재료를 생산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재산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d)"Goulds의 재산(Property of Goulds)"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표시된 판매자 측 공장 내 별도의 선반 또는 구획에서 구매자의 비용 부담 없이 그러한 재산을 보관하는 한편, (e)일반적인 마모 및 인열을 제외하면 동 재산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로 한다. 판매자가 본 주문과 관련해 여러 가지 도구를 입수 또는 제조하고 그러한 도구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또는 그와 관련된 도구 정비 요금을 구매자에게 청구할 경우, 구매자는 본 주문계약서의 주문 완료 또는 계약 해지 시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그러한 도구에 대한 소유권을 인수할 수 있으며, 구매자의 그러한 선택에 관한 통지를 수신한 판매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비용 부담으로 입수한 그러한 도구들의 해당 비용부분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면 그러한 도구들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로 한다.</p>
<p><b><u>14. COMPLIANCE WITH FEDERAL, STATE AND LOCAL LAWS</u></b> - The Seller warrants that the goods covered by this Purchase Order have been p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29 USCA 201-219) and all other applicable federal, state and municipal laws and regulations. Seller is an equal opportunity employer and agrees to perform all of the duties and obligations imposed by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affirmative action clauses of</p>	<p><b><u>14. 연방법, 주법 및 지역 법규의 준수</u></b> - 판매자는 본 주문계약서의 거래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미국 공정근로기준법(29 USCA 201-219) 및 그 외 적용 가능한 모든 연방, 주 및 지자체 법규의 제반 요건에 의거하여 생산되었음을 보증한다. 판매자는 기회균등 고용주로서 미 대통령령 제 11246 호 수정안, 1973년 재활법 제 503 조 수정안, 1974년 베트남참전재향군인 재적응지원법(Vietnam Era Veterans' Readjustment</p>

<p>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s regulations with regard to Executive Order 11246 as amended, Section 503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as amended and the Vietnam Era Veterans’ Readjustment Assistance Act of 1974, as amended (38 USC 4212) and implementing regulations at 41 CFR Chapter 60 and will comply with the provision in Chapter 470 of Executive Order 13201, Notification of Employee Rights Concerning Payment of Union Dues or Fees. Each of these is hereby incorporated by reference and notifies qualified vendors and subcontractors of these same obligations.</p>	<p>Assistance Act of 1974) 수정안(38 USC 4212) 및 시행규칙(41 CFR Chapter 60)과 관련해 미국 노동부 규정의 고용 평등 및 차별철폐조치 조항에서 부과하는 제반 임무 및 의무를 모두 이행하기로 동의하는 한편, 미 대통령령 제 13201 호(조합비의 납부에 관한 피고용자 권리의 통보)의 제 470 장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기로 한다. 이들 규정은 각각 본 계약에 의거해 참조되며 동일한 의무 요건들을 적격한 판매업체 및 하청업자에게 통보한다.</p>
<p><b><u>15. CUSTOMS, &amp; EXPORT CONTROLS AND OFFSET/COUNTER TRADE CREDIT</u></b> A. Credits and Refunds. Transferable credits or benefits associated with or arising from Products purchased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trade credits, export credits or rights to the refund of duties, taxes or fees belong to Purchaser. Seller will, at its expense, provide information necessary (including written documentation and electronic transaction records in Purchaser-approved formats) to permit Purchaser to receive these benefits, credits, or rights. Seller will furthermore, at its expense, provide Purchaser with information, documentation, and electronic transaction records relating to the Products necessary for Purchaser to fulfill any customs-related obligations, origin marking or labeling requirements and certification or local content reporting requirements, to enable Purchaser to claim preferential duty treatment for Products eligible under applicable trade preference regimes, and to make all arrangements that are necessary for the Products to be covered by any duty deferral or free trade zone programs(s) of the country of import. Seller will, at its expense, provide Purchaser or Purchaser’s nominated service provider with export documentation to enable the Products to be exported, and obtain all export licenses or authorizations necessary for the export of the</p>	<p><b><u>15. 통관, 수출 관리 및 절충/연계 무역 신용</u></b> A. 신용 및 환불. 무역 신용장, 수출 신용장 또는 관세, 세금 내지 수수료의 환불 등 본 계약에 의거해 구매할 제품과 관련이 있거나 동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양도 가능 신용장 또는 이익은 구매자가 소유한다. 판매자는 이러한 이익, 신용장 또는 권리를 구매자에게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구매자가 승인한 양식으로 작성된 문서 자료 및 전자 거래 기록을 포함)를 제공하기로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판매자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또한 판매자는 구매자가 통관과 관련된 모든 의무를 이행하면서 원산지 표기 또는 라벨 부착 요건 및 인증 또는 현지 조달 신고 요건들을 준수하고 해당 무역특혜제도에 의거하여 적격한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 대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수입국의 관세 유예 또는 자유무역지대(FTZ)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관련 정보, 문서 자료 및 전자 거래 기록을 구매자에게 제공하기로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판매자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본 계약에 별도의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판매자는 해당 제품의 수출을 진행하고 해당 제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p>

<p>Products unless otherwise indicated in this Contract, in which event Seller will provide all information as may be necessary to enable Purchaser to obtain such licensees or authorization(s).</p> <p>B.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To the extent any good covered by this Contract are to be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f requested by Purchaser, Seller shall comply with all applicable recommendations or requirements of the Bureau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s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C-TPAT") initiative. Upon request, Seller shall certify in writing its compliance with the C-TPAT initiative.</p> <p>C. Export Compliance Certification. On request by Purchaser, Seller shall certify to Purchaser, on a form acceptable to Purchaser, certain information required to assure compliance with any applicable U.S. Export Control Regulations in relation to all transactions under this Agreement. An acceptable certification from Seller shall be required for Purchaser to place or to continue any order under this Agreement, and an unacceptable response is a basis for termination by Purchaser without cost or penalty. Seller shall comply with the export control regulations of all countries from which Seller exports Products in furtherance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p> <p>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 Purchaser's (or Purchaser's affiliates) Products and Services to certain foreign governments, Purchaser may incur direct and/or indirect offset/counter trade obligations. Seller agrees that Purchaser,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shall have the rights to any available offset or counter trade credits that may be obtained from purchases under this Agreement as offset credit or counter trade credit in support of any</p>	<p>수출 허가 또는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 구매자 또는 구매자 측이 지명한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수출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판매자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가 그러한 허가 또는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로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다.</p> <p>B. 테러방지 민관협력 프로그램(C-TPAT). 본 계약의 적용 대상에 속하는 모든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한,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의 테러방지 민관협력 프로그램(약칭 "C-TPAT") 계획의 적용 가능한 모든 권고 사항 또는 요건들을 준수한다. 요청이 있을 경우, 판매자는 C-TPAT 계획의 제반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한다.</p> <p>C. 수출 규정 준수에 관한 증명.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판매자는 본 계약에 의거한 모든 거래와 관련해 적용 가능한 미국 수출관리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몇몇 정보를 구매자가 수용할 수 있는 양식으로 구매자에게 증명한다. 구매자가 수용할 수 있는 판매자의 증명 자료는 본 계약에 의거한 모든 주문을 신청하거나 계속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며, 구매자가 수용할 수 없는 회신은 비용 또는 위약금 없이 구매자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판매자는 본 계약에 의거한 판매자의 의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수출 시 발송지에 해당하는 모든 국가의 수출 관리 규정들을 준수한다.</p> <p>D. 몇몇 해외 정부를 대상으로 구매자(또는 그 계열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p>
---	--

<p>present or future offset or counter trade obligations, in Seller's country. Purchaser shall have the right to assign, sell, or otherwise transfer such credits to third parties of its choice to be used in meeting the offset obligations of said third parties. Seller will use its best reasonable efforts to assist Purchaser in obtaining offset or counter trade benefits related to purchases made by Purchaser under this agreement from the appropriate government officials in Sellers' country.</p>	<p>구매자는 직접적 내지 간접적인 절충/연계 무역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판매자는 구매자, 그 자회사 및 계열사들이 판매자의 국가에서 현재 또는 향후 절충 무역 의무 또는 연계 무역 의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절충 무역 신용 또는 연계 무역 신용으로서 본 계약에 따른 구매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절충 무역 신용 또는 연계 무역 신용을 확보할 권리가 있다는 요건에 대해 동의한다. 구매자는 본인이 선택한 제 3 자의 절충 무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신용을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매도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이전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본 계약에 따른 구매 활동과 관련된 절충 무역 이익 또는 연계 무역 이익을 판매자 본인의 국가에서 해당 정부 공무원들로부터 획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한다.</p>
<p><b>16. FORCE MAJEURE</b> - Discontinuance of, or substantial interference with Purchaser's business, in whole or in part, caused by fire, flood, earthquake, strikes, war, Acts of God, embargo, civil commotion, governmental regulation, or other causes beyond Purchaser's control (whether like or unlike the foregoing), shall give Purchaser the option of canceling all or any part of the undelivered goods and/or services covered by this Purchase Order without incurring liability with respect to the goods and/or services so cancelled.</p>	<p><b>16. 불가항력</b> - 화재, 홍수, 지진, 파업, 전쟁, 천재지변, 통상금지령(엠바고), 내란, 정부 규제 또는 그 외 구매자가 통제할 수 없는 제반 사유(앞서 언급한 사유들과 유사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이 전적인 혹은 부분적인 원인이 되어 구매자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상당 부분 지장이 생길 경우, 구매자는 본 주문계약서의 거래 대상에 해당하는 미인도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그렇게 취소된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p>
<p><b>17. TERMINATION</b> - Purchaser reserves the right to terminate this Purchase Order or delay delivery or acceptance of any of the goods and/or services ordered for its convenience prior to delivery. In such event, Seller shall immediately stop all work and observe any instruction from Purchaser as to work in progress. In addition, Purchaser may, by</p>	<p><b>17. 계약 해지</b> - 구매자는 본 주문계약서의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혹은 배송 전 본인의 편의를 위해 주문한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인도 또는 인수를 연기할 권리가 있다. 그러한 경우, 판매자는 모든 업무를 즉시 중단한 후 현재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하여 구매자의</p>

<p>written notice to Seller, terminate the whole or any part of this Purchase Order if (a) Seller fails to perform any provisions of this order or so fails to make progress as to endanger performance of this order in accordance with its terms, or (b) Seller becomes insolvent or the subject of proceedings under any law relating to bankruptcy or the relief of debtors or admits in writing its inability to pay its debts as they become due. If this Purchase Order is so terminated, Purchaser may procure or otherwise obtain, upon such terms and in such manner as Purchaser may deem appropriate, supplies or services similar to those terminated. Seller shall be liable to Purchaser for any excess costs of such similar supplies or services. Seller shall transfer title and deliver to Purchaser, in the manner and to the extent requested in writing by Purchaser at or after termination such complete goods, partially completed goods and materials, parts, tools, dies, patterns, jigs, fixtures, plans, drawings, information and contract rights as Seller has procured or ac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 terminated part of this order, and Purchaser will pay Seller the contract price for completed goods delivered to and accepted by Purchaser and the fair value of the other property of Seller so requested and delivered. Seller shall continue performance of this order to the extent not terminated. Purchaser shall have no obligations to Seller in respect of the terminated part of this Purchase Order. Purchaser's rights as set forth herein shall be in addition to Purchaser's other rights in case of Seller's default, whether set forth in this order or not.</p>	<p>지침을 따라야 한다. 또한 (a) 판매자가 본 주문계약서의 제반 계약 조항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계약 조건에 따른 본 주문의 주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본 주문의 이행에 차질을 빚을 경우 혹은 (b) 판매자가 파산 또는 채무자의 구제와 관련된 모든 법률에 의거하여 파산하거나 소송의 대상이 될 경우 혹은 만기일이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음을 서면으로 시인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본 주문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요건을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할 수 있다. 본 주문계약서의 계약 조건이 상기와 같이 해지될 경우, 구매자는 해지된 주문 계약과 유사한 공급품 또는 서비스를 본인의 소견으로 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반 조건 및 방식에 따라 조달 또는 획득할 수 있다. 판매자는 이처럼 유사한 공급품 또는 서비스의 초과 비용에 대해 구매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 판매자는 본 주문 계약의 해지된 부분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계약 해지 시 또는 그 이후에 구매자가 서면으로 요청한 방식 및 범위 내에서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이전하는 한편, 판매자 본인이 입수 또는 획득한 완성품, 부분 완성품 및 재료, 부품, 도구, 다이스, 패턴, 지그, 고정구, 설계도, 도면, 정보 및 계약권도 구매자에게 인계한다. 또한 구매자는 판매자가 인도한 후 구매자 본인이 인수한 완성품에 대한 계약가는 물론, 이렇게 요청 및 인도된 판매자 측 여타 자산의 공정 가액도 판매자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판매자는 본 주문 계약을 해지 전까지 계속 이행한다. 구매자는 본 주문계약서의 해지된 계약 조건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본 계약상 약정된 구매자의 권리는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 시 구매자가 보유한 여타 권리(본 주문계약서에 내용상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와 함께 부여한다.</p>
--	---



<p><b>18. ASSIGNMENT</b> – This Purchase Order and any right or obligation or performance hereunder is not assignable or delegable by the Seller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Purchaser, and any such attempted assignment or delegation shall be void and ineffective for all purposes. Seller shall not subcontract for complete or substantially complete parts of work without Purchaser’s prior written approval.</p>	<p><b>18. 양도</b> – 본 주문계약서 및 본 계약에 의거한 모든 권리, 의무 또는 그 이행은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판매자가 임의로 양도 또는 위임할 수 없으며, 그러한 양도 또는 위임을 시도하는 행위는 어떤 목적이든 간에 무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전체 업무 또는 상당 부분의 업무에 대해 하청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p>
<p><b>19. NON WAIVER</b> – Purchaser’s right to require strict observance or performance of each of the terms and provisions hereof shall not be affected by concurrent waiver of any other term or provision or by any previous waiver, forbearance of course of dealing.</p>	<p><b>19. 권리 불포기</b> – 본 계약의 제반 조건 및 조항을 철저히 준수 또는 이행할 것을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구매자의 권리는 여타 모든 계약 조건 또는 조항의 동시 포기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며 혹은 기존의 거래 과정을 포기 내지 중단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p>
<p><b>20. APPLICABLE LAW; VENUE</b> – This Purchase Order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Korea except for its provisions regarding principles of conflicts of law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shall not apply. Any dispute, claim or controversy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or the breach, termination, enforcement, interpretation or validity thereof, including the determination of the scope or applicability of this agreement to arbitrate, shall be submitt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three (3) arbitrators in Seoul, South Korea</p>	<p><b>20. 준거법, 재판지</b> – 본 주문계약서는 국제사법의 원칙에 관한 제반 조항을 제외하면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은 적용하지 않는다. 본 계약의 내용 또는 중재를 위한 본 계약의 적용 범위 내지 대상에 대한 결정을 포함해 본 계약의 위반, 해지, 집행, 해석 또는 효력 등을 이유로 발생하거나 혹은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청구 또는 논쟁은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회부해야 하며, 국제상공회의소 중재규칙에 의거해 대한민국 서울에서 임명된 중재인 3 명이 동 중재규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 절차는 영어로 진행한다. 중재 재정에 관한 판결은 해당 중재 재정 또는 경우에</p>

<p>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 The arbitration procedures shall be held in the English language. Judgment upon an arbitration award may be entered in any court having jurisdiction or application for a judicial acceptance of the arbitration award or an order of enforcement as the case may be. Costs of arbitration shall be borne equally by the Parties.</p>	<p>따라 집행 명령에 대한 사법권이 있거나 그러한 재정 또는 명령의 사법적 수용을 신청한 모든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다. 중재 비용은 계약 당사자들이 공평하게 부담한다.</p>
<p><b>21. SEVERABILITY</b> - If any provisions of this Purchase Order or Purchaser's attachments hereto are deemed invalid or unenforceable, the remaining provisions shall be construed as though such provision does not appear herein and shall be otherwise fully enforceable.</p>	<p><b>21. 분리조항</b> - 본 주문계약서 또는 동 계약서에 첨부된 구매자 측 첨부 문서의 어떤 조항이 무효하거나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나머지 조항들은 마치 본 계약서에서 문제의 조항이 없는 것처럼 해석하며 모두 집행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p>
<p><b>22. AUDIT RIGHTS</b> -If requested by Purchaser, Seller and its authorized representatives will permit Purchaser at any time with reasonable notice to: a) examine all pertinent documents, data and other information relating to the goods, tooling, Seller'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under any purchase orders issued by Purchaser, any payment made to Seller by Purchaser or any claim made by Seller; b) view any facilities or processes relating to the goods or any purchase order, including those relating to production quality; c) audit any facilities or processes to determine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any purchase order issued by Purchaser and this Agreement; and d) dispatch an inspection service to perform Purchaser directed independent verification of Seller product at Seller's premises and with Seller's inspection equipment Any examination under this section will be conducted during normal business hours and upon reasonable advance written notice to Seller. Seller must keep all documents for a period of at least 6 years after</p>	<p><b>22. 감사권</b> -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판매자와 그 수권 대리인은 적절한 통보를 통해 구매자가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a) 제품, 공구 세공, 본 계약 및 구매자가 교부한 주문계약서에 따른 판매자의 제반 의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대금 또는 판매자가 제기한 청구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든 관련 문서, 데이터 및 기타 정보를 검토, b) 생산 품질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정을 포함해 해당 제품 또는 어떤 주문계약서와 관련된 모든 시설 또는 공정을 시찰, c) 구매자가 교부한 모든 주문계약서 및 본 계약서의 제반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제반 시설 또는 공정 검사, d) 판매자의 사업장에서 판매자의 검사 장비를 활용해 판매자 측 제품에 대한 구매자가 지시하는 단독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검사 용역을 파견. 본 조항에 의거한 모든 검사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적절한 사전 통지서를 전달한 후 정상적인 영업시간 내에 실시하기로 한다. 판매자는 본 계약에</p>

<p>final payment is received under this contract.</p>	<p>의거해 구매자로부터 최종 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최소한 6년 동안 모든 거래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p>
<p><b>23. PRODUCT RECALL</b> - If a recall is required under the law or Purchaser determines that it is advisable, Seller and Purchaser shall promptly develop a Corrective Action Plan which shall include all actions required by an applicable consumer protection or similar law and any applicable regulations and provide Purchaser with an opportunity to review and approve such plan. To the extent a recall is determined to have been caused by a defect, quality or performance deficiency, other deficiency, non-conformance or non-compliance, which is the responsibility of Seller, at Purchaser's election, Seller shall perform all necessary repairs or modifications at its sole expense, or Purchaser shall perform such necessary repairs or modifications and Seller shall reimburse Purchaser for all reasonable out-of-pocket costs and expenses incurred by Purchaser in connection therewith. In either case, Seller shall reimburse Purchaser for all reasonable out-of-pocket costs and expenses incurred by Purchaser in connection with any recall, repair, replacement, or refund progra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 investigating and/or inspecting the affected goods; (ii) locating, identifying, and notifying Purchaser's customers; (iii) repairing, or where repair of the goods is impracticable or impossible, repurchasing or replacing the recalled goods; (iv) packing and shipping the recalled goods and (v) media notification, if such form of notification is needed or required. Each party shall consult the other before making any statements to the public or a governmental agency relating to potential safety hazards affecting the goods, except where such consultation would prevent timely notification required by law.</p>	<p><b>23. 제품 리콜</b> - 법률에 의거해 제품 리콜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구매자의 소견으로 볼 때 제품 리콜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적용가능한 소비자 보호법 또는 그와 유사한 내용의 법률 및 적용 가능한 모든 규정에서 요구하는 제반 조치를 내용상 포함하는 시정조치계획을 즉시 마련하는 한편, 그러한 계획을 검토 및 승인할 기회를 구매자에게 부여한다. 제품의 결함, 품질 또는 성능상의 결점, 기타 결점, 규격 부적합 또는 미준수 등 판매자의 책임에 해당하는 제반 사유로 인해 제품 리콜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한, 판매자는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한 모든 수리 또는 변경 작업을 단독 비용 부담으로 수행해야 하며 혹은 필요한 수리 또는 변경 작업을 구매자가 수행하고 판매자는 그러한 작업과 관련해 구매자가 부담하는 적정 액수의 현금 지불 비용 및 경비를 모두 구매자에게 변제한다. 어떤 경우든 판매자는 아래에 열거한 사항들을 포함한(이에 국한하지 않음) 제품 리콜, 수리, 교체 또는 환불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적정 액수의 현금 지불 비용 및 경비를 모두 구매자에게 변제한다. (i) 리콜 대상 제품을 조사 및/또는 검사, (ii) 구매자 측 고객들의 위치 및 신원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리콜을 통보, (iii) 해당 제품을 수리 혹은 제품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리콜된 제품을 재구매하거나 교체, (iv) 리콜된 제품을 포장 및 발송, (v) 미디어를 이용한 리콜 공지(이러한 형태의 공지가 필요하거나 요구될 경우).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해당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안전 사고에 관한 보고서를 공공 기관 또는</p>

	<p>정부 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먼저 계약 상대방과 협의한다. 단, 쌍방 간 협의가 법률에서 요구하는 시의적절한 통보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b>24. RESTRICTED MATERIALS</b> – Seller covenants that none of the goods sold or transferred to Purchaser contains any: (i) of the following chemicals: arsenic, asbestos, benzene, beryllium, carbon tetrachloride, tetrachloroethylene, methyl chloroform,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polybrominated biphenyls (“PBBs”),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 chemical or hazardous material otherwise prohibited pursuant to Section 6 of U.S.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iii) chemical or hazardous material otherwise restricted pursuant to EU Directive 2002/95/EC (the “ROHS Directive”); (iv) designated ozone depleting chemicals as restricted under the Montreal Protocol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1,1,1 trichloroethane, carbon tetrachloride, Halon-1211, 1301 and 2402, and chlorofluorocarbons (“CFCs”) 11-13, 111-115, 211-217); (v) substance listed on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Candidate List, subject to authorization, and restricted under EU Directive 2011/65/EU and when it shall be repealed, and any related Annexes thereto; (vi) any Conflict Minerals as defined by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US Public Law 111-203) and implementing regulations, and/or law or regulation of any jurisdiction that prohibits or requires reporting of the purchase or sale of products that contain any Conflict Mineral that originated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or an</p>	<p><b>24. 사용이 제한된 재료들</b> –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판매 또는 이전한 해당 제품이 다음과 같은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서약한다. (i) 비소, 석면, 벤젠, 베릴륨, 사염화탄소, 사염화에틸렌, 메틸 클로로포름, 폴리염화비페닐(“PCB”), 폴리브롬화비페닐 (“PBB”), 폴리브롬화디페닐 에테르(“PBDE”) 등의 화학물질, (ii) 미국 유해물질규제법(“TSCA”) 제 6 조에 의거해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 또는 위험물, (iii) EU 지침 2002/95/EC(“ROHS 지침”)에 의거해 사용이 제한된 화학물질 또는 위험물, (iv)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에 의거해 사용이 제한된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1,1,1-트리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할론-1211, 1301 및 2402 와 일명 ‘프레온 가스’라 불리는 염화불화탄소(“CFC”) 11-13, 111-115 및 211-217 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하지 않음), (v) EU 지침 2011/65/EU 에 의거해 허가 및 (동 지침의 폐지 시) 사용이 제한된 성분으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제도(“REACH”) – 대상 성분 목록’에 관한 2006년 12월 18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 1907/2006 호 및 그와 관련된 부속규정에 수록된 성분, (vi) 미국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미국공법 제 111-203 호)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리고/또는 콩고민주공화국 혹은 인접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분쟁광물(Conflict Mineral)을 함유한 제품의 구매 내지 판매를 금지하거나 그러한 제품의 매매를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모든 사법권의 법규에 규정된 분쟁광물</p>

<p>adjoining country; or (vii) other chemical or hazardous material the use of which is restricted in any other jurisdiction to or through which Purchaser informs Seller the goods are likely to be shipped to or through which Seller otherwise has knowledge that shipment will likely occur, unless with regard to all inclusion of such chemicals or hazardous materials in goods sold or transferred to Purchaser. Upon request from Purchaser and subject to reasonable confidentiality provisions which enable Purchaser to meet its compliance obligations, Seller will provide Purchaser with the chemical composition, including proportions, of any substance, preparation, mixture, alloy or goods supplied under this Purchase Order and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or data regarding the properti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est data and hazard information. To the extent Products are imported into the EU, Seller hereby certifies that the Products comply with the EU REACH regulations,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Upon request, by Purchaser, Seller shall provide the country/countries of origin for all products, components, and materials subject to this Purchase Order.</p>	<p>또는 (vii) 구매자가 해당 제품의 발송 가능성을 판매자에게 통지할 때 제품의 도착지 내지 경유지에 해당하거나 혹은 판매자가 해당 제품의 발송 가능성을 인지할 때 제품의 도착지 내지 경유지에 해당하는 여타 모든 사법권(관할지)에서 사용이 제한된 그 밖의 화학물질 또는 위험물. 단, 구매자에게 판매 또는 이전된 제품에서 그러한 화학물질 또는 위험물이 포함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리고 구매자가 본인의 준법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적절한 비밀 유지 규정에 따라 판매자는 본 주문계약서에 의거해 공급된 모든 성분, 조제물, 혼합물, 합금 또는 제품의 화학적 조성(비율을 포함) 및 그 외 제반 특성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 내지 데이터(시험 데이터 및 위험 정보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하지 않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EU 지역으로 제품을 수입할 경우, 판매자는 해당 제품들이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제도(REACH)'에 관한 2006년 12월 18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 1907/2006호의 EU REACH 규정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이에 증명한다.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판매자는 본 주문계약서의 거래 대상에 속하는 모든 제품, 구성품 및 재료의 원산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p>
<p><b>25. HAZARDOUS SUBSTANCES -</b> To the extent required by applicable law, Selle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collection, treatment, recovery and/or disposal of (i) the Products or any parts thereof when they are deemed by law to be "waste"; and (ii) any items for which the Products or any parts thereof are replacements. If Seller is required by applicable law,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Legislations, European Directive 2012/19/EU and related Legislations in EU Member States,</p>	<p><b>25. 위험물 -</b> 적용 가능한 준거법에서 요구하는 한, 판매자는 (i) 법률상 "폐기물"로 간주되는 해당 제품 또는 그 부품을 수거, 처리, 회수 및/또는 폐기할 책임이 있으며 (ii) 제품 또는 그 부품을 교체할 때 그 대상이 되는 해당 품목을 수거, 처리, 회수 및/또는 폐기할 책임이 있다. EU 지침 2012/19/EU의 전기전자폐기물처리지침(WEEE)에 관한 법률과 EU 회원국 내 관련 법률을 포함해(이에 국한하지 않음) 적용</p>

<p>to dispose of “waste” Products or any part thereof, Seller shall dispose of such Products entirely at its own cost (including all handling and transportation costs).</p>	<p>가능한 준거법에 의거하여 "폐기용" 제품 또는 그 부품을 폐기해야 할 경우, 판매자는 전적으로 본인의 비용 부담(모든 처리비 및 운송비를 포함)을 통해 그러한 제품들을 폐기한다.</p>
<p><b>26. LIEN WAIVERS</b> – Seller shall furnish, upon Purchaser’s request, waivers by Seller and all other persons entitled to assert any lien rights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is Purchase Order and shall indemnify Purchaser against all costs, loss or liability incurred by Purchaser as a result of any failure by Seller or any other person to comply with this provision.</p>	<p><b>26. 유치권 포기</b> – 판매자는 본 주문계약서의 제반 조건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해 모든 유치권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 판매자 본인 및 그 외 모든 당사자의 기권 각서를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며, 판매자 또는 그 외 당사자가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과실을 범함으로써 구매자가 부담하거나 입는 모든 비용, 손실 내지 채무를 구매자에게 배상한다.</p>
<p><b>27. SELLER COMPLIANCE</b> - In performing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Seller will not use child labor as defined by local law, will not use forced or compulsory labor, will not physically abuse labor and will respect employees’ rights to choose whether to be represented by third Parties and to bargain collectively in accordance with local law. In addition, in all wage and benefit, working hours and overtime and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al matters, Seller will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Seller further agrees that, if requested by Purchaser, it shall demonstrate, to the satisfaction of Purchaser, compliance with all requirements in this paragraph. Purchaser shall have the right to inspect any site of Seller involved in work for Purchaser, and failure to comply with the obligations in this paragraph shall be cause for immediate termination without penalty or further liability to Purchaser.</p>	<p><b>27. 판매자의 규정 준수</b> - 판매자는 본 계약에 의거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현지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미성년 노동력은 물론, 강제적이거나 의무적인 노동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물리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는 한편, 현지 법률에 의거한 피고용자의 제 3 자 대리인 선택권 및 단체 교섭권을 존중하기로 한다. 또한 임금 및 급부,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보건, 안전 및 환경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판매자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규를 준수하기로 한다. 또한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판매자는 본 항에 명시된 모든 요건들을 준수하고 있음을 구매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에 동의한다. 구매자는 본인을 대신해 업무에 종사하는 판매자의 모든 사업장을 검사할 권리가 있으며, 본 항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본 계약의 즉각적인 해지 사유로 성립되며 구매자는 그에 따른 위약금 또는 부가적인 물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p>

<p><b>28. PURCHASER'S CODE OF CONDUCT</b> - Seller agrees to adhere to the Code of Conduct <a href="http://www.itt.com/newsroom/publications/code-of-conduct/">http://www.itt.com/newsroom/publications/code-of-conduct/</a> of Purchaser's parent, (ITT Inc.), as if it were an affiliated company of Purchaser. Purchaser's Code of Conduct prohibits any of its employee and their families from accepting any business courtesy from a supplier on non-government business other than limited refreshments and meals during a business meeting or promotional business items of only token value, however, such gifts are discouraged. On government business, no business courtesies of any kind can be accepted by any of Purchaser's employee or their families. Seller agrees to conform to these business courtesy restrictions and acknowledges that their failure to comply is grounds for immediat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with cause without further liability.</p>	<p><b>28. 구매자의 윤리강령</b> - 판매자는 마치 구매자의 계열사인 것처럼 구매자 측 모회사(ITT Inc.)의 기업윤리강령 (<a href="http://www.itt.com/newsroom/publications/code-of-conduct/">http://www.itt.com/newsroom/publications/code-of-conduct/</a>)을 준수하기로 동의한다. 구매자의 윤리강령은 업무 회의 중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다과 및 식사 혹은 상징적인 가치만 있는 기업홍보용품 이외에 민간업계의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사업 답례품을 구매자 측 직원 및 그 가족들이 수락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선물은 받지 않도록 한다.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 거래에서 구매자 측 직원 또는 그 가족들은 어떠한 종류의 사업 답례품도 수락할 수 없다. 판매자는 이러한 사업 답례품 규제 요건들을 준수하기로 동의하며, 이러한 요건들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본 계약의 정당한 즉각적 해지 사유로 성립되며 그에 따른 부가적 책임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p>
<p><b>29. SELLER PROTOCOL</b> - Seller agrees to adhere to the Supplier Expectation Protocols of Purchaser <a href="http://itt.com/itt/Media/itt/ITTSite/About/itt_supplier-expectations.pdf">http://itt.com/itt/Media/itt/ITTSite/About/itt_supplier-expectations.pdf</a> Suppliers are expected to conduct themselves in a fair and open manner, and together with Purchaser strive to "do the right thing always" with respect to business conduct, ethics and corporate citizenship. Suppliers are expected to be truthful, strictly adhere to the letter and the spirit of all laws, provide high-quality products and services, conform to locally accepted standards of good corporate citizenship, promote and sustain a work environment that fosters mutual respect, openness and individual integrity as well as be a global citizen by never letting the end justify the means and always living up to ethical, environmental and social responsibilities.</p>	<p><b>29. 판매자 협약서</b> - 판매자는 구매자의 공급업체 요건협약서(Supplier Expectation Protocols of Purchaser, <a href="http://itt.com/itt/Media/itt/ITTSite/About/itt_supplier-expectations.pdf">http://itt.com/itt/Media/itt/ITTSite/About/itt_supplier-expectations.pdf</a>) 에 명시된 제반 요건을 준수하기로 동의한다. 공급업체들은 공정하면서도 개방적인 태도로 처신하면서 기업의 행동, 윤리 및 시민의식 면에서 구매자와 함께 "항상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공급업체들은 매사에 정직하게 행동하고 모든 법률의 형식과 내용을 엄수하며 품질이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국 현지에서 인정한 기업의 시민의식 기준들을 준수하면서 상호 존중, 개방성 및 개인의 청렴성을 증진하는 업무 환경을 고취 및 유지하는 한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p>

	<p>정당화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윤리적, 환경적, 사회적 책임에 따라 늘 행동함으로써 세계 시민으로서의 모범을 보이도록 한다.</p>
<p><b>30. INDEPENDENT CONTRACTOR</b> - The relationship between Purchaser and Seller is that of independent contractors and not that of partners, principle and agent, joint ventures, employment or similar types. Neither Party has and neither Party will receive as a result of this Agreement or otherwise any right or authority to assume responsibility or create any liability on behalf of the other in any manner.</p>	<p><b>30. 독립 계약자</b> -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는 독립 계약자 간의 계약관계에 해당하며 동업자 간 관계, 사업주와 대리인 간 관계, 합작투자 법인 간 관계, 고용관계 또는 그와 유사한 종류의 관계에 속하지는 않는다. 본 계약의 어떤 당사자도 본 계약의 결과로서 혹은 다른 근거에 따라 계약 상대방을 대신하여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부담하거나 야기할 권리 또는 권한이 없으며 향후에도 그러한 권리 또는 권한을 획득하지 아니한다.</p>
<p><b>31. ENGLISH LANGUAGE</b> - All of Seller's communication with Purchaser and information provided to Purchaser shall be supplied in the English language. Translations may be made for convenience, but the English versions shall be the controlling legal document.</p>	<p><b>31. 영어로 의사 교환</b> - 판매자와 구매자의 모든 의사 교환 및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영어로 전달한다. 편의를 위해 번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만 영문본을 주요한 법적 문서로 간주한다.</p>
<p><b>32. INTELLECTUAL PROPERTY</b> - Seller grants Purchaser all rights and licenses necessary for Purchaser and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to use, transfer, pass-through, and sell the products and services and to exercise the rights granted under this Purchase Order.</p>	<p><b>32. 지적 재산</b> - 판매자는 구매자와 그 자회사 및 계열사가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 이전, 이양 및 판매하고 본 주문계약서에 의거해 허용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 및 라이선스를 구매자에게 허용한다.</p>
<p><b>33. ENTIRE AGREEMENT</b> - This Purchase Order is intended by the parties as a final expression of their agreement and also is a complete and exclusive statement of the terms thereof, any prior oral or written agreements as to the same subject matter notwithstanding. This agreement may not be modified or terminated orally, and neither modification nor any claimed waiver of any</p>	<p><b>33. 완전한 합의</b> - 본 주문계약서는 계약 쌍방이 의도한 바와 같이 계약 쌍방 간 합의를 최종적으로 표현한 동시에 그러한 합의의 모든 조건들을 배타적으로 진술한 문서로서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합의한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본 계약서의 내용은 구두로 변경 또는 해지할 수</p>



5/10/18 Terms and Conditions

2018년 5월 10일

*Final Version*  
*May 10, 2018*  
최종 계약서

<p>of the provisions hereof shall be binding unless in writing and signed by the party against whom such modification or waiver is sought to be enforced.</p>	<p>없으며 본 계약의 제반 조항에 대한 변경 및 포기는 그 대상이 되는 계약 당사자의 서면 합의 및 서명이 없는 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p>
---	---